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. 7. 12 선고 2017가단182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7. 12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,

가. 서산시 D 임야 1,368㎡ 지상 별지(1)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ㄴ'부분 세멘부력조 함석지붕 주택 92㎡를 철거하고,

나. 서산시 D 임야 1368㎡ 중 별지(2)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ㄱ'부분 421㎡를 인도하며,

다. 2012. 4. 7.부터 위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피고 C는 원고에게 서산시 D 임야 1,368㎡ 지상 별지(1)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ㄴ'부분 세멘부력조 함석지붕 주택 92㎡ 및 서산시 D 임야 1368㎡ 중 별지(2)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ㄱ'부분 421㎡에서 퇴거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이세창

별지